

##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의 시행에 따른 전망 및 발전방향

- '12년 8월 5일부터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시행되며, 본 자격제도는 무시험 과정이수형 자격으로 업무 독점형 자격이 아니라 능력인정형 자격임. 따라서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분야에 종사할 수 있으며, 의무규정도 없음

-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의 시장에서의 활용가치는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임. 따라서 장례지도사의 배치기준 등에 대하여 정부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장례지도사는 과정이수형 자격이므로 교육에 대한 질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부실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 법제도의 미미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1.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배경

#### □ 도입배경

- 근대적 위생 관념의 도입 이후로 공중보건과 위생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관심이 증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다루는 종사자나 장소 등에 대한 공중보건학적 관심은 높지 않음
- 산업사회의 발달과 도시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장례서비스는 장례관련 전문인력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이들 종사자의 역량에 달려 있음
- 국민 보건위생, 복지서비스 측면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이들 인력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고, 지금까지 22개 기관에서 민간자격증이 2만여 건 발급되는 등('12년 5월 현재) 사후적인 문제소지가 매우 높음에 따라 이들의 직업윤리나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시급히 제기됨
- 따라서 이와 같이 국민의 실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장례지도사에 대한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업윤리성을 높여 장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 서비스의 직접적 이용 당사자인 국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됨
- 나아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장례전문인력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강화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도입논의<sup>1)</sup>

- 장례전문인력 자격제도는 1981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염사제도'를 둔 것이 도입의 시작이며, 1987년에는 '염사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운영되다가 1993년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염사관리지침이 폐지되어 국가차원의 관리규정이 사라지고, 현재까지 민간자격증 제도로 운영되게 됨

1) 염사와 장례지도사는 동일한 자격개념은 아님

- 그 이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되는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장례지도사 국가 자격증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으나('01년 1월, '07년 5월), 현행 민간제도의 문제점이 부각 되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비용 상승 요인 등이 있으므로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는 규제개혁 위원회의 권고로 인하여 철회됨
- 2011년 6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와 관련된 손숙미 의원의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쳐 같은 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되어, '12년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주관부서: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2. 장례지도사 자격 및 직업현황분석

### □ 국내외 장례지도사 자격 및 직업현황

#### ○ 국내현황

- '12년 5월 현재 민간자격 등록기관으로 등록된 22개 기관에서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고, 지금까지 약 2만여 건의 민간자격증이 발급된 것으로 추산되며, 실제 상업적인 목적에서 장례업에 종사하는 장례지도사는 5천명에서 8천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음

#### ○ 국외현황

- 미국의 경우, 장례지도사와 시신보존처리사의 면허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만이 장례사업관련 장소나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지할 수 있음.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주법으로 규정하고, 그 조건은 주마다 차이가 있으며, 연방자격시험 또는 주자격시험을 통해 면허가 발급됨
- 일본의 경우, 장례 업무 종사자의 기능향상 및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1996년 도입된 민간자격으로 후생노동성 장관의 인정을 받은 '장제지도사기능심사협회'에서 장제지도사 기능심사를 수행함. 일본의 장제지도사는 소비자가 더 안심하고 높은 수준의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표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국가자격제도가 아닌 영국장례지도사협회(NAFD)에서 소정의 최고지도사 과정(장례지도사)을 이수한 후 검정시험을 실시함. 특히 직장보건안전법은 장사시설에 종사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뉴질랜드의 경우, 장례관련 사업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뉴질랜드 국가자격체계에 대학의 전문학위 수준(national diploma 5)으로 장례지도사와 시신보존처리사 자격을 규정하고 있어 교육훈련을 실시함. 54주 과정의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만 20세 이상의 관련업계 종사자로 최소 12개월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음

## □ 국내외 장례지도사 전문교육 사례 및 현황

- 장례관련 교육기관은 장례지도사 관련 정규과정이 설치된 대학(대학원 1곳, 대학교 1곳, 전문대 4곳)과 민간교육기관(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종교기관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대학의 학위과정이나 각 민간교육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민간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경우 대략적으로 상장례, 공중보건, 장례상담, 관련 법규 등의 4가지 과목으로 분류할 수 있음

## 3.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의 흐름

### □ 자격제도의 개요

- 자격은 광의로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협의로 볼 때는 구체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한 증명서를 의미하기도 함(박종성 외, 2005)
- 자격은 기능별로는 업무독점형과 능력인정형으로 구분되며, 내용별로는 전문자격과 일반자격으로, 시행주체별로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됨

### □ 장례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및 운영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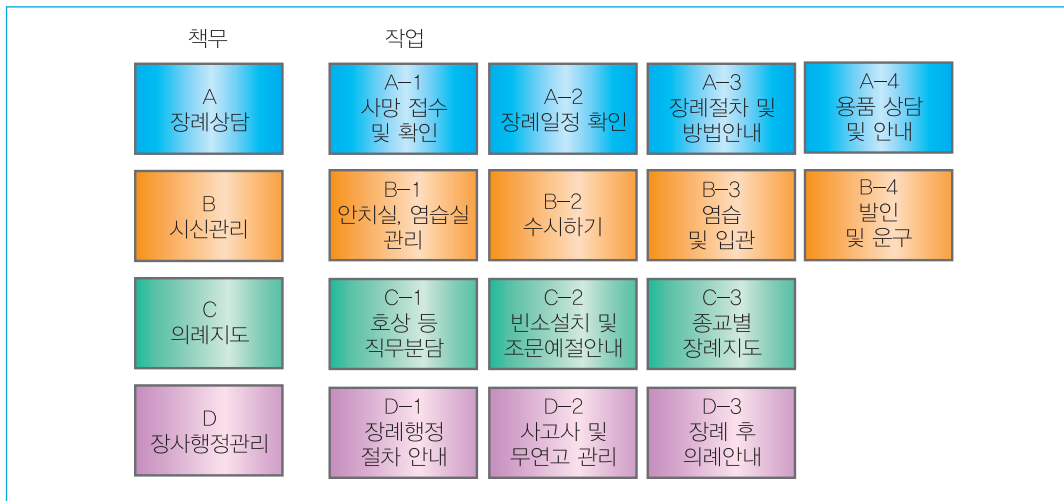
- 장례지도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1조에 근거, 국민의 건강과 안위 그리고 존엄을 유지하는 분야로 볼 수 있으므로, 장례지도사 직무의 표준화로 장사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대국민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개별법의 국가자격으로 도입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현재 관련법은 의원입법의 형태로 도입됨
- 현재 시행 예정인 장례지도사 자격제도는 검정형 자격이 아닌 과정이수형 자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한 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교육기관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요구됨

### □ 장례지도사의 직무 및 범위

- 장례지도사의 직무는 '장례의식에 따른 절차 및 각종 정보 제공과 시신처리 과정에서 시신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필요한 장례용품을 공급하고, 장례의식 진행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편익과 국민 보건을 증진' 시키는 것임
- 장례지도사의 직무는 크게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장사행정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장례상담은 고인이 사망한 후 전체적인 일정과 장례내용에 대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사망접수 및 확인, 장례일정 확인, 장례절차 및 방법안내, 용품 상담 및 안내를 하는 것임
  - 시신관리는 시신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것으로 안치실이나 염습실의 관리, 수시, 염습 및 입관, 발인 및 운구 등 시신의 전체적인 관리를 포함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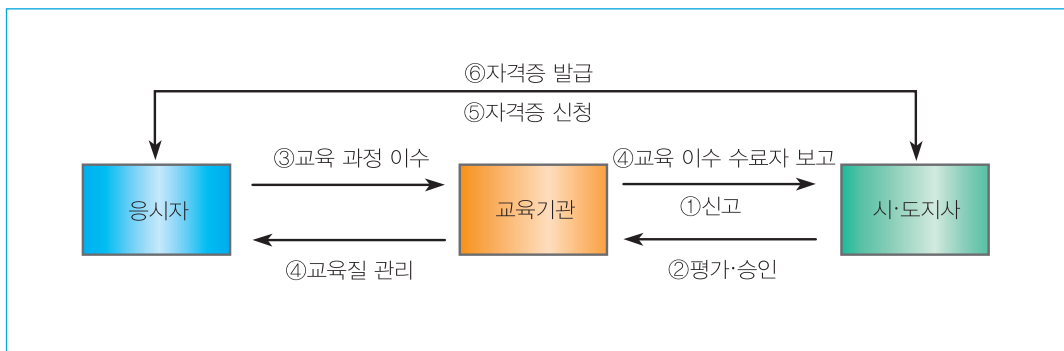
- 의례지도는 전반적인 의례를 지도하는 것으로 호상 등 직무분담, 빈소설치 및 조문예절 안내, 종교별 장례지도를 포함함
- 장사행정관리란 장례와 관련된 각종 행정적인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장례행정 절차 안내, 사고사 및 무연고 사망자 관리, 장례 후 의례안내 등이 포함됨

[그림 1] 장례지도사 직무 흐름도



□ 장례지도사 자격제도 운영개요

[그림 2] 장례지도사 자격제도 운영시스템



## 4. 장례지도사 자격증제도 시행규칙안<sup>2)</sup> 개요

### □ 자격증 발급

○ 자격증 발급은 광역 시도지사가 담당하며, 시도에 신고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무시험 과정이수형 제도

### □ 교육과정

〈표 1〉 표준교육과정(신규자 기준)

구분	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강의 (150시간) / 실기연습 (100시간)	장례 상담	유족상담	4	4
		장례상담 절차	8	8
	장사시설관리	장사시설	6	
		장례식장 실무	4	4
	위생관리	관리실 및 장비기구 위생관리	6	8
		시체의 위생관리	8	12
	연습 및 장법실습	수시 및 연습	5	30
		발인 및 운구	5	16
	공중보건	총론	4	
		건강과 질병	8	
		예방대책	10	
	장례학개론	장례의 의미와 기능	8	
		상장제의례 이해	15	
		상장제의례의 실제		6
		종사자 직업윤리	4	
	장사법규	장사관련법규	25	
		기타 관련 법규 안내	12	
	장사행정	장사행정절차	10	
		장사행정실제	8	12
			소계	① 150
현장실습 (50시간)	장례식장 실습		50	
	소계		③ 50	
총 계(① + ② + ③)			50	

2)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참조(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 '12년 5월)

□ 교육시간

- 현장실습은 현장실습기관(장례식장)에서 수행하며, 제시된 ‘표준 교육과정’ 을 이수하여야 장례지도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신규자 기준 300시간)
- 교육생은 이론강의·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9할 이상 출석하고, 8개 과목당 평가 점수가 각 6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함

□ 교육기관 설치 및 운영

- 교육운영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안정적인 강의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함
- 전임교수는 교육인원 40명 당 1인 이상 두도록 하며, 해당분야의 경력자(학사학위 미소지자)의 경우 외래교수로 둘 수 있도록 함

□ 교육시간 감면 등에 대한 조항

〈표 2〉 교육시간 감면 대상자의 교육이수 시간

경력	일반 경력자	민간자격증 소지자	장례관련 학과 졸업생	종교단체 연습 종사자
1년 이상~3년 미만	100	50	25	50
3년 이상	0	0	0	50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일부 민간자격증 발급기관의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교육시간 감면
- 그 밖에 일반경력자, 장례관련학과 졸업생, 종교단체 연습종사자 등에 대해서 교육시간 감면 규정을 두어, 특례대상(경력 3년 이상)이 되지 못하는 기존 경력자들에 대해서도 경력인정을 하도록 정함
- 교육시간 감면조항의 경우 특례에서와 같이 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특례(기존 경력자에 대한) 조항

- 기존 경력자들의 경우, 연습을 포함한 장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기본교육 6시간을 이수하고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기본교육은 장사법규, 장사행정, 공중보건, 직업윤리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본 특례조항은 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함('14년 8월 4일까지)

## 5. 향후 전망 및 개선방향

### □ 장례지도사 제도의 조기 정착화를 위한 제언

-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의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발급 및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에 대한 절차는 시도에서 진행하도록 규정됨. 따라서 시행 이전에 인력에 대한 준비를 포함한 관련 업무의 실행과 관련하여 시도에서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요구됨.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련 내용을 시도와 협조체계를 통하여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제도 시행 초기 특례 대상자의 자격증 취득신고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분한 사전준비 요망
- 장례지도사 과정은 교육과정 이수형 제도이므로, 무엇보다도 교육의 질 관리가 중요하므로, 교육기관에 대한 꾸준한 관리를 통하여 전체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질을 계속 유지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방법이나 내용을 준비하여 부실한 교육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한 방지대책이 요구됨
-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또한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홍보를 통하여 인식의 개선은 물론, 장례복지 서비스를 위한 국가의 다양한 정책적 개선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 □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의 내용적 보완을 위한 제언

-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이 도입되게 되면, 자격기본법 제14조에 의거 동일 명칭의 민간자격증은 사용할 수 없게 됨. 따라서 기존 관련 민간자격증은 국가자격증으로 수렴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은 업무 독점형 자격제도가 아니며, 의무고용에 대한 규정도 없어서 국가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시장에서의 활용가치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임
  - 그러나 국가자격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장례지도사 배치기준 및 의무고용제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자격등급은 장례지도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의 문제와 관련되는데, 집단사망자 관리나 장례식장 경영 등과 같이 현재의 장례지도사 업무에서 제외된 역할이나 기존 포함된 업무들의 심화된 역할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또한 자격검정시험은 품질관리를 위해서 요구되기도 하므로, 역할과 업무 범위, 자격등급과 자격검정시험에 대한 검토와 고민이 요구됨
  - 요양보호사의 경우 무시험 자격검정제도 이후 품질관리를 위해 시험제도가 도입됨

- 현재 개정 장사법에서는 보수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음. 그러나 자격의 지속적 질 관리를 위해서는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법제도 집행의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언

- 현재 장례지도사 자격취소기준이 지나치게 일반적이며, 자격취소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자격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서 자격취소 이후 곧장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등 자격취소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야 함
- 교육의 질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함. 따라서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시급함
- 장례지도사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책임 부여를 통하여 장례절차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가격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적절한 수준에서 해소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장례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수준의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박건(보건복지정보센터 초빙연구위원)    문의(02-380-829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